

# 「평창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20일 박찬원의원의 5인이 발의하여, 2016년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## 1. 제안이유

-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평창군 전통 한옥의 보존과 건축을 권장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한옥의 등록 신청 및 결정 규정(안 제5조)
  - 한옥 소유자는 군수에게 등록 신청
  - 관계서류 검토, 현장 조사 실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
- 등록 한옥의 유효기간 및 승계(안 제6조)
  - 등록 한옥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함.
- 등록 한옥의 해지(안 제7조)
  - 한옥 소유자 등이 군수에게 등록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와 군수가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
- 등록 한옥의 건축 등 지원(안 제9조)
  - 건축 등의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
  - 한옥 건축에 따른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

- 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(안 제10조)
  -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
- 한옥위원회 설치·운영 및 기능, 유사위원회 활용  
(안 제14조 및 제15조, 제16조)
  - 「평창군 건축 조례」에 따른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가 대신함.

### 3. 관련법령(또는 참고자료)

-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제24조
-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17조

### 4.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평창군 전통한옥의 보존과 건축을 권장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
  - 주요 내용을 보면
    - 안 제5조에서는 한옥의 등록 신청 및 결정
    - 안 제6조에서는 등록 한옥의 유효기간 및 승계
    - 안 제7조에서는 등록 한옥의 해지
    - 안 제9조에서는 등록 한옥의 건축 등 지원
    - 안 제10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
    -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한옥위원회 설치·운영 및 기능 유사위원회 활용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음.

○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 평창군 전통 한옥의 보존과 건축을 권장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, 조문 및 형식은 적절하게 작성되었으며,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 【관계 법령】

### □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건축자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건축자산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4조(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범위와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도로, 전기, 상수도·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하여 「한국관광공사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 적용하거나 안내 및 홍보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.

### □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17조(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)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한옥마을은 일단(一團)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.

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
2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사업비 보조 및 융자
3.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